

##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http://www.dongbang.co.kr/>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23.03.15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4.04.24

## [동방]

### 정 보 공 개 서

(주)동방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3. 4.24.

(주)동방

####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2길 16, AIA타워 3층(전화: 02-2190-8011,

FAX : 02-755-6207, (주)동방 총무팀)

## <목 차>

|                                        |    |
|----------------------------------------|----|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 4  |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 7  |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 11 |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 12 |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 17 |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 27 |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 29 |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 29 |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신설) .....         | 31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    | 영업표지        | 주 소                         |         |              |             |
|-------|-------------|-----------------------------|---------|--------------|-------------|
| (주)동방 | 동방          |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2길 16, AIA타워 3층 |         |              |             |
|       | 법인 설립등기일    | 사업자등록일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 1965. 1.14. | 1972.12.27.                 | 박창기     | 02-2190-8011 | 02-755-6207 |
|       | 법인등록번호      | 110111-0124521              | 사업자등록번호 | 105-81-69429 |             |

###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상호/이름                                                                    | 영업표지 | 주소                          |             |
|-----------------|--------------------------------------------------------------------------|------|-----------------------------|-------------|
| 가맹본부            | (주)동방                                                                    | 동방   |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2길 16, AIA타워 3층 |             |
| 특수관계인<br>(등기임원) | 박창기(대표이사)                                                                | 대표자  | 대표번호                        | 팩스번호        |
|                 | 김형곤(대표이사)<br>조홍규(사내이사)<br>이정현(사내이사)<br>박준권(사외이사)<br>이종배(사외이사)<br>노동표(감사) | 박창기  | 02-2190-8011                | 02-755-6207 |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동방]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 구 분       | 내 용                                                                               | 추가 설명         |
|-----------|-----------------------------------------------------------------------------------|---------------|
| 명 칭       | 동방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
| 상 호       | 동방 운송가맹점                                                                          |               |
| 상표(서비스표)  |  | 서비스표 등록번호: 없음 |
| 광 고       | -                                                                                 | -             |
| 그 밖의 영업표지 | -                                                                                 | -             |

※ 본 영업표지는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상표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연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매출액         |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
|-------|-------------|-------------|-------------|-------------|------------|-------------|
| 2021년 | 498,183,527 | 385,901,985 | 112,281,542 | 570,299,845 | 22,816,080 | (7,265,308) |
| 2022년 | 517,263,612 | 398,709,763 | 118,553,850 | 728,039,189 | 26,399,664 | 8,053,302   |
| 2023년 | 535,439,932 | 394,761,561 | 140,678,371 | 713,841,356 | 31,562,443 | 23,031,131  |

\* 당사 재무상황 요약의 근거자료는 별첨 1 참조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여부              | 이름  | 현 직위 | 사업경력            |    |            |
|-------------------|-----|------|-----------------|----|------------|
|                   |     |      | 기간              | 직위 | 담당 업무      |
| 가맹사업<br>관련 임원     | 박창기 | 대표이사 | 2014.12.08 ~ 현재 | -  | 회사 업무 총괄   |
|                   | 조홍규 | 전무   | 1991.01.06 ~ 현재 | -  | 가맹점 관리     |
| 가맹사업<br>비관련<br>임원 | 김형곤 | 회장   | 2000.06.01 ~ 현재 | -  | 그룹업무 총괄    |
|                   | 김용대 | 명예회장 | 1981.05.07 ~ 현재 | -  | 그룹업무 고문    |
|                   | 정운건 | 사장   | 1989.07.01 ~ 현재 | -  | 특수영업 총괄    |
|                   | 김은혁 | 상무   | 2002.12.01 ~ 현재 | -  | 특수영업       |
|                   | 배상현 | 상무   | 2003.12.01 ~ 현재 | -  | 특수영업       |
|                   | 박성준 | 상무   | 1999.11.01 ~ 현재 | -  | 경영기획 총괄    |
|                   | 이정현 | 부사장  | 1991.01.16 ~ 현재 | -  | 경영지원 총괄    |
|                   | 전윤범 | 상무   | 1996.01.22 ~ 현재 | -  | 미래전략사업 총괄  |
|                   | 김재형 | 상무   | 2002.12.01 ~ 현재 | -  | TPL사업 총괄관리 |
|                   | 노동표 | 감사   | 2023.03.31 ~ 현재 | -  | 상임감사       |
|                   | 김한준 | 상무   | 1991.01.16 ~ 현재 | -  | 부산지역 총괄관리  |
|                   | 유병건 | 상무   | 2021.01.25 ~ 현재 | -  | 울산지역 총괄관리  |
|                   | 김춘전 | 상무   | 1994.11.21 ~ 현재 | -  | 포항지역 총괄관리  |
|                   | 구자점 | 상무   | 2002.03.01 ~ 현재 | -  | 광양지역 총괄관리  |
|                   | 이장원 | 상무   | 1996.01.22 ~ 현재 | -  | 창원지역 총괄관리  |
|                   | 정영민 | 상무   | 2021.03.26 ~ 현재 | -  | 평택지역 총괄관리  |
|                   | 박준권 | 이사   | 2023.03.31 ~ 현재 | -  | 사외이사       |
|                   | 전인찬 | 이사   | 2022.03.25 ~ 현재 | -  | 사외이사       |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점            | 임원수(명) |     | 직원수(명) |
|---------------|--------|-----|--------|
|               | 상근     | 비상근 |        |
| 2023년 12월 31일 | 18     | 2   | 806    |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칭         | 권리내용                   | 등록 및<br>등록신청<br>여부(일자) | 출원번호 및<br>등록번호 | 소유자<br>(등록신청자) | 존속기간<br>만료일<br>(가맹본부의<br>사용기간) |
|------------|------------------------|------------------------|----------------|----------------|--------------------------------|
| 동방<br>(상표) | 가맹점 소유 영업용<br>화물차량에 표시 | -                      | -              | -              | -                              |

당사의 등록된 지식재산권이 없어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 재산권이 없으며 상표 등을 사용하는 관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며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 (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동방]을 시작한 날 (가맹점 영업개시일) : 2023년 6월 11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1992년 3월 14일)

### 2. [동방] 연혁

| 가맹본부<br>상호 | 영업표지 | 대표자의<br>이름 | 가맹사업 경영 기간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주)동방      | 동방   | 박창기        | 2023. 6.11.~ 현재 | 서울시 중구 통일로2길 16, 3층 |

### 3. [동방] 업종

| 영업표지 | 업종  |           |
|------|-----|-----------|
| 동방   | 대분류 | 소분류(주요상품) |
|      | 운송  | 화물차       |

####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동방]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 지역 | 2021.12.31. |      |      | 2022.12.31. |      |      | 2023.12.31. |      |      |
|----|-------------|------|------|-------------|------|------|-------------|------|------|
|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전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 전체 | 1           | -    | 1    | 1           | -    | 1    | 26          | 25   | 1    |
| 서울 | 1           | -    | 1    | 1           | -    | 1    | 1           | -    | 1    |
| 부산 | -           | -    | -    | -           | -    | -    | 2           | 2    | -    |
| 대구 | -           | -    | -    | -           | -    | -    | -           | -    | -    |
| 인천 | -           | -    | -    | -           | -    | -    | 2           | 2    | -    |
| 광주 | -           | -    | -    | -           | -    | -    | -           | -    | -    |
| 대전 | -           | -    | -    | -           | -    | -    | -           | -    | -    |
| 울산 | -           | -    | -    | -           | -    | -    | 3           | 3    | -    |
| 세종 | -           | -    | -    | -           | -    | -    | -           | -    | -    |
| 경기 | -           | -    | -    | -           | -    | -    | 3           | 3    | -    |
| 강원 | -           | -    | -    | -           | -    | -    | -           | -    | -    |
| 충북 | -           | -    | -    | -           | -    | -    | -           | -    | -    |
| 충남 | -           | -    | -    | -           | -    | -    | 2           | 2    | -    |
| 전북 | -           | -    | -    | -           | -    | -    | 2           | 2    | -    |
| 전남 | -           | -    | -    | -           | -    | -    | 6           | 6    | -    |
| 경북 | -           | -    | -    | -           | -    | -    | 5           | 5    | -    |
| 경남 | -           | -    | -    | -           | -    | -    | -           | -    | -    |
| 제주 | -           | -    | -    | -           | -    |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동방] 가맹점 수

(단위: 개)

| 연도   | 연초 | 신규 개점 | 계약 종료 | 계약 해지 | 명의 변경 | 연말 |
|------|----|-------|-------|-------|-------|----|
| 2021 | -  | -     | -     | -     | -     | -  |
| 2022 | -  | -     | -     | -     | -     | -  |
| 2023 | -  | 25    | -     | -     | -     | 25 |

#### 6. [동방]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동방] 외에 다른 가맹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동방]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 지역 | 2023년<br>말<br>가맹점수 |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                                        |                  |                           |                  |                              | 비고 <sup>⑤</sup> |
|----|--------------------|-------------------------|----------------------------------------|------------------|---------------------------|------------------|------------------------------|-----------------|
|    |                    | 연간 평균 매출액               |                                        | 연간 평균<br>매출액(상한) |                           | 연간 평균<br>매출액(하한) |                              |                 |
|    |                    | 연간 평균<br>매출액            | 면적 <sup>⑥</sup><br>3.3m <sup>2</sup> 당 | 상한               | 면적<br>3.3m <sup>2</sup> 당 | 하한               | 면적<br>3.3m <sup>2</sup><br>당 |                 |
| 전체 | 25                 | 450,521                 | -                                      | 726,292          | -                         | 37,236           | -                            | 4업체 산정          |
| 서울 | -                  | -                       | -                                      | -                | -                         | -                | -                            | -               |
| 부산 | 2                  | -                       | -                                      | -                | -                         | -                | -                            | -               |
| 대구 | -                  | -                       | -                                      | -                | -                         | -                | -                            | -               |
| 인천 | 2                  | -                       | -                                      | -                | -                         | -                | -                            | -               |
| 광주 | -                  | -                       | -                                      | -                | -                         | -                | -                            | -               |
| 대전 | -                  | -                       | -                                      | -                | -                         | -                | -                            | -               |
| 울산 | 3                  | -                       | -                                      | -                | -                         | -                | -                            | -               |
| 세종 | -                  | -                       | -                                      | -                | -                         | -                | -                            | -               |
| 경기 | 3                  | -                       | -                                      | -                | -                         | -                | -                            | -               |
| 강원 | -                  | -                       | -                                      | -                | -                         | -                | -                            | -               |
| 충북 | -                  | -                       | -                                      | -                | -                         | -                | -                            | -               |
| 충남 | 2                  | -                       | -                                      | -                | -                         | -                | -                            | -               |
| 전북 | 2                  | -                       | -                                      | -                | -                         | -                | -                            | -               |
| 전남 | 6                  | -                       | -                                      | -                | -                         | -                | -                            | -               |
| 경북 | 5                  | 450,521                 | -                                      | 726,292          | -                         | 37,236           | -                            | 4업체 산정          |
| 경남 | -                  | -                       | -                                      | -                | -                         | -                | -                            | -               |
| 제주 | -                  | -                       | -                                      | -                | -                         | -                | -                            | -               |

\* 가맹점 사업자의 매출은 당사 온라인 화물정보망에서 발생한 매출로 면적당 매출 산정은 해당사항 없음

\* 2023년 전국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은 7개월로 1년 매출로 환산하여 연간 매출액 산정 함

## 8. [동방]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동방]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   | 영업중인 가맹점 수 | 평균 영업기간 |
|------|------------|---------|
| 2023 | 25         | 265일    |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사총판)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동방]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이 없습니다.

#### 11. 가맹금 예치

당사는 귀하로부터 최초 가맹금을 수령하고 있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귀하로부터 최초 가맹금을 수령하고 있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동방]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 구분     | 지급 대상 | 예치 대상 여부 | 비고      |
|--------|-------|----------|---------|
| 최초 가맹금 | -     | -        | 해당사항 없음 |
| 보증금    | -     | -        | 해당사항 없음 |
| 기타 비용  | -     | -        | 해당사항 없음 |

##### 1) 최초 가맹금

당사는 귀하로부터 최초 가맹금을 수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금액    | 지급 기한 | 반환조건 <sup>③</sup>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비고                 |
|--------|-------|-------|-------------------|-------------|--------------------|
| 총계     | [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
| 가입비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
| 최초 교육비 | -     | -     | -                 | -           | 온라인 교육을 통한 무상교육 실시 |
| 개점행사비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

##### 2) 보증금

당사는 귀하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있지 않습니다.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당사는 귀하로부터 최초 가맹금을 수령하고 있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구분       |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
| 합계       | 0                  |
| 가입비      | 0                  |
| 교육비      | 0                  |
| 개점행사비    | 해당사항 없음            |
| (현금) 보증금 | 0                  |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

당사는 온라인에서 화물정보망을 통하여 고객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게 중개하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으로 영업을 위해 별도의 점포와 기타 장치나 설비가 필요하지 않아 귀하로부터 그 밖에 지급 비용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선정 주체                       | 선정 기준                                                                   |
|-----------------------------|-------------------------------------------------------------------------|
| (주)동방 총무팀<br>(02-2190-8011) | ※당사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은 가맹점 입지선정 관련 해당사항 없음<br>(모든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은 전국 단위로 설정) |

###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교육 기준                        | 계약·채용 기준                                                   |
|--------|------------------------------|------------------------------------------------------------|
| 가맹점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기준에 준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또는 제24조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 |
| 운전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59조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 |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보유                                              |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동방]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공급업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2. 영업 중의 부담

###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 지급할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지급대상 | 금액         | 지급기한                   | 반환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비고 |
|----------|------|------------|------------------------|-------------------------------|-----------------------------|----|
| 영업표지 사용료 | 가맹본부 | 0          | 계약일 및 계약 갱신일 기준 10일 이내 | 계약해지 시 계약기간 사용료 일할계산분을 제외한 금액 | 계약기간 사용료 일할계산 사용료는 반환될 수 없음 |    |
| 수시교육비    | 가맹본부 | 0          | 수시 교육일 기준 10일 이내       | 교육 미 실시 시                     | 교육 실시 시                     |    |
| 상품 광고비   | 가맹본부 | 상품 광고비 50% | 명세서 발행 기준 30일 이내       | 광고 미 집행 시                     | 광고 집행 시                     |    |
| 판촉비      | 가맹본부 | 0          | 판촉비 집행일 기준 10일 이내      | 판촉 미 집행 시                     | 판촉 집행 시                     |    |
| 합계       | 가맹본부 | 광고비 50%    |                        |                               |                             |    |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당사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 사업은 화물정보망(온라인 네트워크)으로 화물을 중개하는 사업이므로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가맹점사업자에 요구할 사항이 없습니다.

| 구분(기준: 2023년)                   | 내용      |
|---------------------------------|---------|
|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해당사항 없음 |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해당사항 없음 |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가맹점 지원 및 관리를 위해 필요시 가맹점 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자료 요청 시 이를 성실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귀하가 부담하셔야 할 재 가맹비는 없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금액 | 지급 기한 | 반환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비고              |
|--------|----|-------|------|-------------|-----------------|
| 총계     | -  | -     | -    | -           | -               |
| 추가 교육비 | -  | -     | -    | -           | 온라인을 통한 무상교육 실시 |
| 점포 이전비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동방]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동방]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는 무상 온라인 교육 예정이므로 없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금액 | 지급 기한   | 비고           |
|--------|----|---------|--------------|
| 양도 교육비 | -  | 해당사항 없음 | 무상 온라인 교육 예정 |

###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맹점 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메뉴얼 등)를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가맹사업 영업내용이나 고객정보를 타인에 넘겨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

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당사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로 물품 구입 및 임차 관련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동방]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 2) 당사가 [동방]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용역명             | 제한내용 및 조건                   | 위반시 책임                                                                   | 비고 |
|--------------------|-----------------------------|--------------------------------------------------------------------------|----|
| 영업용 화물자동차<br>운송 용역 |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br>용역을 판매할 수 없음 | 1회 위반: 구두 경고<br>2회 위반: 2회 이상<br>서면 시정요구<br>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br>사유가 될 수 있음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상대방<br>(고객)     | 상품·용역명           | 제한내용 및 조건                                 | 위반시 책임                                                                   | 비고 |
|-------------------|------------------|-------------------------------------------|--------------------------------------------------------------------------|----|
| 불법 과적<br>운송 요청 고객 | 영업용 화물<br>자동차 운송 | 불법 과적<br>운송을 요청하는<br>고객의 요청은<br>수행 할 수 없음 | 1회 위반: 구두 경고<br>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br>시정요구<br>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br>사유가 될 수 있음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관련업계 시장이나 소비자의 동향 그리고 다른 경쟁업체와의 경쟁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가격을 귀하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가 정한 권장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운송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와 협의 해 주셔야 합니다.

| 상품·용역명      | 권장가격(단위: 원) | 가격 통보 방법                 | 비고                     |
|-------------|-------------|--------------------------|------------------------|
| 화물자동차 운송 용역 | 시장가격        | 동방 화물정보망에<br>배차 건별 통보 제시 | 화물별, 운송구간별<br>운송 가격 선정 |

####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준용)에 따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준용)에 따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준용)에 따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준용)에 따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준용)에 따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현재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제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향후 소비자의 트렌드 변화, 상품개발, 판로개척 등의 필요로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제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 상품이나 용역을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에 공급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음

##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신설)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 연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        |
|------|-----------------------|---------|---------------|--------|
|      |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      | 가맹점                   | 기타 오프라인 | 자사 온라인몰       | 기타 온라인 |
| 2023 | -                     | 100%    | -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 연도   |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
|------|--------------|-------------|
| 2023 | 100%         | -           |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동방]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2년입니다.

##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순 서                                                                         | 기간(계약만료일: D-day) |
|-----------------------------------------------------------------------------|------------------|
|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br>예→②, 아니오→⑦                                      | D-180 ~ D-90     |
|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br>예→④, 아니오→③                                  | D-180 ~ D-90     |
|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br>예→⑤, 아니오→A                                | D-180 ~ D-90     |
|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br>예→B, 아니오→A                 | ①+15일 이내         |
|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br>예→C, 아니오→⑥                                   |                  |
|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br>예→B, 아니오→D                   |                  |
|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br>예→B, 아니오→⑧                       | D-180 ~ D-90     |
|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br>예→E, 아니오→A                      | D-60일 이전         |
|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D-day            |
|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 D-day            |
|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D-day            |
|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                |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                |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갱신요구 거절 사유                                                                                                                                                                                                                                                                                          | 관련 계약조문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li> <li>○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li> <li>○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 설비, 인력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 면허, 허가의 취득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li> <li>○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하여</li> </ul> | 36조     |

|                                                                                                                                                                                                      |  |
|------------------------------------------------------------------------------------------------------------------------------------------------------------------------------------------------------|--|
|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br>○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br>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br>○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에 의하여 가맹본부가<br>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br>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
|------------------------------------------------------------------------------------------------------------------------------------------------------------------------------------------------------|--|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해지 사유                                                                                                          | 관련 계약조문 |
|-------------------------------------------------------------------------------------------------------------------|---------|
| ○ 가맹점사업자에게 본 계약에서 정한 물품공급중단 사유가 있는 경우                                                                             | 37조     |
|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37조     |
|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거절 된 경우                                                                            | 37조     |
|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37조     |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의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37조     |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른 후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 37조     |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37조     |
|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37조     |
|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37조     |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37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사유가 발생 할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재조정 절차                                                                     | 동의 절차                                                                  |
|----------------------------------------------------------------------------|------------------------------------------------------------------------|
|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br>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양도 · 상속 및 대리행사

###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새로운 가맹점사업자를 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들여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 가능 조건                       | 양도 절차                                                                                                               | 비고                        |
|--------------------------------|---------------------------------------------------------------------------------------------------------------------|---------------------------|
|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문의: 총무팀<br>(02-2190-8011)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나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 구분   | 가능 여부(조건)  | 이전 범위                  | 절차                                                | 기타 의무사항 |
|------|------------|------------------------|---------------------------------------------------|---------|
| 상속   | 상속인 사후통지 시 | 모든 권리의무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       |
| 대리행사 | 본부 승인 시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1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       |
| 업무위탁 | 본부 승인 시 가능 | -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1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동방]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업금지 되는 업종     | 경업허가 절차                                                              | 비고                     |
|----------------|----------------------------------------------------------------------|------------------------|
|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 문의: 총무팀 (02-2190-8011) |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동방]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시간    | 영업일수          | 비고                        |
|---------|---------------|---------------------------|
| 1일 24시간 | 365일 연중 무휴 영업 | 문의: 총무팀<br>(02-2190-8011)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을 필요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9. 광고 및 판촉 활동

###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동방]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광고 성격                | 부담비율        |                                         | 분담 절차                                             | 비고                                      |
|-------------|----------------------|-------------|-----------------------------------------|---------------------------------------------------|-----------------------------------------|
|             |                      | 본사부담        | 가맹점부담                                   |                                                   |                                         |
| 광고<br>전체 행사 | 상품광고                 | 광고비의<br>50% | 광고비 50%<br>중 가맹점<br>총매출액<br>비율 따라<br>산정 |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br>광고참여 여부 결정 →<br>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 대중매체 광고<br>명절, Day<br>이벤트 행사<br>(전국 행사) |
|             | 상품광고<br>+가맹점<br>모집광고 | 광고비의<br>50% | 광고비 50%<br>중 가맹점<br>총매출액<br>비율 따라<br>산정 |                                                   |                                         |
|             | 가맹점<br>모집광고          | 전액 부담       | 없음                                      |                                                   |                                         |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하게 필요한 절차는 없습니다.

##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

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구분              | 내용                                     | 소요기간 | 소요비용                                                  |
|-----------------|----------------------------------------|------|-------------------------------------------------------|
| 합계              | -                                      | 16일  | IV.가맹점사업자의 부담<br>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br>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전화문의 접수<br>-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 14일  |                                                       |
| 사업 설명·상담        |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예상매출액 제공<br>- 가맹희망자 상담 |      |                                                       |
| 최종 협의 및 가맹계약 체결 | - 개설 승인 및 가맹계약 체결                      | 1일   |                                                       |
| 영업개시일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당일   |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

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예상매출액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동방]의 가맹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귀하에게 가맹점환경개선에 대한 비용지원 의무는 없으나 당사는 귀하와 협의하여 비용을 지원 할 수 있습니다.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3. 경영활동 자문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동방]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동방]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최소시간 | 비용(단위: 천원,<br>부가세 포함) | 비고         |
|--------|------|-----------------------|------------|
| 신규 교육  | 4시간  | 0                     | 최초 계약 시 이수 |
| 부정기 교육 | 4시간  | 0                     | 필요 시 실시    |

###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른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부정기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여받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신설)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 연번 | 지역 | 명칭    | 소재지                         |
|----|----|-------|-----------------------------|
| 1  | 전국 | (주)동방 |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2길 16, AIA타워 3층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 비고                     |
|---------------------|------------------------|
| 31년 9개월             | 1992년 3월 14일<br>직영점 시작 |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 비고                                                         |
|----------------------|------------------------------------------------------------|
| 307,135,000천원        | 당사의 직영점(화물자동차 운송) 매출액은 당사 공시자료를 근거로 하여 기재 하였습니다. (별첨 2 참조) |

[별첨 1]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첨 2]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